

정 전 협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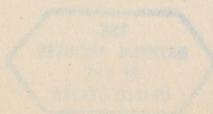
제 1 권

협 정 문 본

정 전 협 정

제 1 권

협 정 문 본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련합국군 총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서 언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련합국군 총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조선 총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조선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 조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1. 한개의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기 이 (2) 킬로 메터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개의 비무장 지대를 설정한다

한개의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 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 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 (첨부한 지도 제 1도를 보라)

3. 비무장 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 (첨부한 지도 제 1도를 보라)

4. 군사 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 정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비무장 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식물을 세운다 군사 정전 위원회는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식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 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 (첨부한 지도 제 2도를 보라) 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 정전 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 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 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 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7.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시민이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 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드러갈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도 드러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드러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비무장 지대에 드러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 지대 내의 군사 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비무장 지대내의 군사 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연합국군 총 사령관이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 지대에 드러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사민의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천 (1,000) 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인원 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인든지 모두 군사 정전 위원회 그의 보조 인원 그의 공동 감시 소조 및 소조의 보조 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독 위원회 그의 보조 인원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 및 소

조의 보조 인원과 군사 정전 위원회로부터 비무장 지대로 드러갈 것을 특히 허가 받은 기라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 지대 출입과 비무장 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 지대 내의 두 지점이 비무장 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도로로써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 두 지점 간의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하여한다

제 2 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가. 총 칙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북 해 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무장 력량이 조선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 협정이 조인된지 십이 (12) 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전 협정의 기라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 협정 제63항을 보라)

13. 군사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 회의를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리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7. 본 정전 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은 제외하고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칠십이 (72) 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 군사 역량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 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 역량을 비무장 지대로부터 철거한후 비무장 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 위원회 또는 그의 공동 감시 소조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협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칠십이 (72) 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사십오 (45) 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 그 감독하에 비무장 지대 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칠십이 (72) 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 정전 위원회의 감독하에서 사십오 (45) 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 부대와 군사 정전 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 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든지 비무장 지대에 드려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 (10) 일 이내에 상대방의 조선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섬들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 역량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철거를 연기할 쌍방이

동의한 리유 없이 또 철거를 연기할 유효한 리유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 력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섬”이라는 용어는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중에서 백령도 (북위 37도 58분 동경 124도 40분) 대청도 (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2분) 소청도 (북위 37도 46분 동경 124도 46분) 연평도 (북위 37도 38분 동경 125도 40분) 및 우도 (북위 37도 36분 동경 125도 58분)의 도서군들을 연합국군 총 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두는 것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조선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연합국군 총 사령관의 군사 통제 하에 남겨 둔다. (첨부한 지도 제3도를 보라)

다. 조선 경외로 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을 드려 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의 부대와 인원의 문환 임시 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조선에의 도착 및 조선 경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 임무를 담당하였던 인원의 조선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문환”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조선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인원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환 인원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조선에 드려오며 또 조선으로부터 내어 갈수 있다. 문환은 일 (1) 인 대 일 (1) 인의 교환 기초 위에서 진행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어느 일 (1) 력월내에 문환 정책하에서 조선 경외로부터 잠만 오천 (35,000) 명 이상의 군사 인원을 드려 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 인원을 드려오는 것이 해당 측이 본 정전 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조선으로 드려온 군사 인원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자로부터 조선을 떠난 해당 측의 군사 인원의 루체 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 측의 어떠한 군사 인원도 조선에 드려 올수 없다. 군사 인원의 조선에의 도착 및 조선으로부터의 리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경과 출경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경하는 인원과 출경하는 인원의 수자를 포함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문환을 감독하며 시찰한다.

2.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드려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 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일 (1) 대 일 (1) 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조선으로 드려 올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조선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관하여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중에서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 정령을 설명한다 교체되어 조선으로부터 내어가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내어 갈수 있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그의 중립국 지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며 지찰한다

ㄱ. 본 정전 협정 중의 어떠한 규정이던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ㄴ. 매장 지점이 기록에 있고 분묘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조선 지역에 상대방의 분묘 등록 인원이 드려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 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 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 인원의 시체를 발굴 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 정전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 인원의 매장 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ㄱ. 군사 정전 위원회와 그의 공동 감시 소조 및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임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교통선을 경유하여 (첨부한 지도 제4도를 보라) 중립국 감독 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 간을 왕래할때와 또 중립국 감독 위원회 본부와 본 정전 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 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의를 준다는 필요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수송 기재를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ㅇ. 군사 정전 위원회 및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 편의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ㄴ.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 부근 비무장 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개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결정한다

ㄷ.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중환 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라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의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 인원이

국제 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정전 협정은 쌍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적대 중의 일체 지상
군사 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 역량은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조선 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정전 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 역량에 적용되며 이러
한 해상 군사 역량은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조선
북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조선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
지 못한다

16. 본 정전 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공중 군사 역량에 적용되며 이러
한 공중 군사 역량은 비무장 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조선
지역 및 이 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정전 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정전
협정에 조인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
은 각각 그들의 지휘 하에 있는 군대 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
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정전 협정의 전체 규정
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호상 적극
협력하며 군사 정전 위원회 및 중립국 감독 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정전 협정 전체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나. 군사 정전 위원회

1. 구 성

19. 군사 정전 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 정전 위원회는 십 (10) 명의 고급 군관으로 구성하되 그 중의 오 (5) 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오 (5) 명은 연합국군 총 사령관이 이를 임명한다. 위원 십 (10) 명 중에서 각방의 참 (3) 명은 장령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이 (2) 명은 소장 준장 대좌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 정전 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 보조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 정전 위원회는 필요한 행정 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라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일 (1) 명 보조 비서장 일 (1) 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 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조선문 중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하되 세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1. 군사 정전 위원회는 처음에는 십 (10) 개의 공동 감시 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 정전 위원회의 상방 수석
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ㄴ. 매개의 공동 감시 소조는 사 (4) 명 내지 목 (6) 명의 좌급 군
관으로 구성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
민 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반수는 연합국
군 총 사령관이 이를 임명한다 공동 감시 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
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족 인원은 상방이 이를 제공한다

2. 직 책 과 권 한

24. 군사 정전 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정전 협정의 실시를 감독하
며 본 정전 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 정전 위원회는

ㄱ. 본부를 관문점 (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40분 00초)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 정전 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상방 수석 위원
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 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
할 수 있다

ㄴ. 공동 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ㄷ.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ㄹ. 본 정전 협정 중 비무장 지대와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口. 공동 감시 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ㅂ. 본 정전 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ㅅ. 중립국 감독 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정전 협정 위반 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 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ㅇ. 하기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 포로 송환 위원회와 실향 사민 귀향 협조 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ㅈ. 적대 쌍방 사령관 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 역할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저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호상 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ㅊ. 그의 공작 인원과 그의 공동 감시 소조의 증명 문건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 표식을 발급한다

26. 공동 감시 소조의 임무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본 정전 협정 중의 비무장 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 정전 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은 공동 감시 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 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정전 협정 위반 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동 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 정전 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 감시 소조의 만수 이상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 정전 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정전 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 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 정전 위원회가 본 정전 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할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 사건을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 정전 위원회가 본 정전 협정의 어떠한 위반 사건이 만족하게 지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 정전 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 위원은 합의하여 칠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 위원이든지 이십사 (24) 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 정전 위원회의 일체 회의 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 감시 소조는 군사 정전 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 정전 위원회는 본 정전 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 기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라의 보고 기록등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 정전 위원회는 적대 쌍방 사령관들에게 본 정전 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설립한다

37.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사 (4) 명의 고급 군관으로 구성하되 그 중의 이 (2) 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측 파관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하며 그 중의 이 (2) 명은 연합군 측 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측 서전 및 서서가 이를 임명한다 본 정전 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 부대가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 부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 위원은 후보 위원 일 (1) 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떤 사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한다 이러

한 후보 위원은 그 정 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 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 위원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 국가가 제공한 참모 보조 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 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필요한 행정 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의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7.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처음에는 이십 (20) 개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 정전 위원회의 상방 수석 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시찰 소조는 오직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ㄴ. 매개 중립국 시찰 소조는 최소 사 (4) 명의 군관으로 구성하되 이 군관은 좌급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 중의 반수는 연합군군 총 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 시찰 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무장 부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소조의 직책 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이 (2) 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일 (1) 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일 (1) 명은 연합국군 총 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족 인원 및 각 소조의 임무 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각방 사령관이 비무장 지대 내 및 자기측 군사 통제 지역 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 시찰 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 감독 위원회를 구성한 그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직 책 과 권 한

41.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임무는 본 정전 협정 제13항 ㄷ 목 제13항 ㄹ 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ㄱ. 본부를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ㄴ.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ㄷ. 그 위원 및 그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협정 제43항

에 려거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 협정 제13항 2목 제13항 2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정전 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정전 협정 제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 시찰 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조선으로 드려오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한다 단 이 규정은 어떠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 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또는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2. 중립국 시찰 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3.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 지역내에 있는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려거한 출입항에 오 (5) 개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주재시키며 연합국군 총 사령관의 군사 통제 지역 내에 있는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려거한 출입항에 오 (5) 개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십 (10) 개의 중립국 이동 시찰 소조를 후비로 설치하되 중립국 감독 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 정전 위원회의 쌍방 수석 위원 합의에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이동 시찰 소조 중 군사 정전 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 위원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중립국 시찰 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 내와 교통선에
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 (첨부한 지도 제5도를 보라)

3. 총 칙

44.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 위
원은 합의하여 월 (7) 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
원이던지 이십사 (24) 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일체 회의 기록의 부분은 매번 회의 후 월
수 있는대로 속히 군사 정전 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조선문 중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 시찰 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시찰 및 조사의 결과에 관하
여 중립국 감독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동 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
출한다 보고는 소조 총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조
원 일 (1) 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도 있다 개별적 조원 일 (1)
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중립국 시찰 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분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 정전 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
립국 감독 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 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 군사 정전 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
의 해당 심의 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 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
고에 대하여서도 최후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 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 위원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조원은 곧 군사 정전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본 정전 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 기
록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
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
의 최후 해산 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군사 정전 위원회에 본 정전 협정의 수정 또
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 감독 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 정전 위
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제 3 조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 하는 당시에 각방이 수용하고 있는 전
제 전쟁 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정전 협정 조인 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7.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묶잡 (60) 일 이내에 각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총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 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총환 인도하며 어떠한 저해도 가하지 못한다. 총환은 본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총환 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방은 정전 협정 조인 전에 직접 총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 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직급 (직급이 있으면) 및 수용 번호 또는 군 번호를 포함한다.

8. 각방은 직접 총환하지 않은 남아지 전쟁 포로를 그 군사 통제와 수용하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 총환 위원회에 넘겨 본 정전 협정 부록 “중립국 총환 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9. 세가지 글을 병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정전 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 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 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선문 중에서는 “총환” 중국문 중에서는 “遣返” 영문 중에서는 “REPATRIATION” 이라고 규정한다.

52. 각방은 본 정전 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총환되는 어떠한

한 전쟁 포로되기 조선 총돌중의 전쟁 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총환을 전지하는 전체 병상 전쟁 포로는 우선적으로 총환한다 가
능한 범위 내에서 포로된 의무 인원을 병상 전쟁 포로와 동시에 총환하
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정전 협정 제51항 7목에 규정한 전체 전쟁 포로의 총환은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묵집 (60) 일의 기한 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 내에 각방은 책임지고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 포로의 총환
을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관문점을 쌍방의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할
때에는 전쟁 포로 총환 위원회는 기타의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 (들)
을 비무장 지대 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7. 전쟁 포로 총환 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좌급 군관
육 (6) 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삼 (3) 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
국인민 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하며 그중 삼 (3) 명은 련
합국군 총 사령관이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 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하에서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 포로 총환에 관계
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정전 협정 중의 전쟁 포로
총환에 관계되는 일체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
무는 전쟁 포로들이 쌍방 전쟁 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 포로 인도 인
수 지점 (들) 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 전쟁

포로의 수송 및 복리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정전 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 적십자 소조의 전쟁 포로 송환 협조 사업을 조절하며 본 정전 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 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들)을 선정하며 전쟁 포로의 인도 인수 지점(들)의 안전 조치를 취하며 전쟁 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ㄴ. 전쟁 포로 송환 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 포로 송환 위원회는 군사 정전 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ㄷ. 전쟁 포로 송환 위원회가 전쟁 포로 송환 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7.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적십자사 대표와 중화 인민 공화국 적십자사 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연합국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 대표를 다른 일방으로 하여 조직되는 공동적십자 소조를 설립한다. 공동 적십자 소조는 전쟁 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복무로써 쌍방이 본 정전 협정 제51항 7목에 규정한 송환을 견지하는 전체 전쟁 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

하여 공동 적십자 소조는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 (들) 에서 쌍방의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 포로의 위문과 전쟁 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 적십자 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 (들) 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 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ㄴ. 공동 적십자 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십 (10) 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이십 (20) 명으로 구성하며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 (들) 에서 쌍방의 전쟁 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문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복무는 전쟁 포로 총환 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 (30) 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육십 (60) 명으로 구성하며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 관리 하의 전쟁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 (들) 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 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각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삼십 (30)

명색을 내어 쌍방 합하여 목록 (60) 명으로 구성하며 연합국군 관리 하의 전쟁 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 포로 수용소에서 전쟁 포로 인도 인수 지점 (들) 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 포로에게 복무를 제공할 수 있다 연합국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 적십자 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이 (2) 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립할 수 있다 분조 내에서 각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 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공동 적십자 소조에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 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 적십자 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 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 포로 총환 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ㄷ. 각방 사령관은 공동 적십자 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 통제 지역 내에서 책임지고 공동 적십자 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각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 통제 지역 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 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ㄹ. 공동 적십자 소조는 본 정전 협정 제51항 7목에 규정한 총환

을 전지하는 전체 전쟁 포로의 송환 계획이 완수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로 해산한다

58. 7. 각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정전 협정
이 효력을 발생한 후 십 (10) 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
은 전쟁 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 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날자 이후에 도망
한 전쟁 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 기간 중에 사
망한 전쟁 포로의 성명 국적 직급별 및 기라의 직별 자료 또한
사망 날자 사망 원인 및 매장 지점에 관한 자료

ㄴ.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 자료의 마감한 날자 이후에 도망하였거
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 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항
7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자료를 전쟁 포로 송환 위원회를 거쳐 상
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 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
할때까지 십 (10) 일에 일차씩 제공한다

ㄷ. 전쟁 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도래한 도망하였던 어떠한 전쟁 포로도 이를 군사 정전
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7.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연합국군 총 사령관의
군사 통제 지역에 있는 자료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 협정에

확정된 군사 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연합국군 총 사령관은 그들이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 도라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 하는 당시에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 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년 6월 24일에 본 정전 협정에 확정된 군사 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전체 사민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은 그들이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에 도라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국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2.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 중 연합국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연합국군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연합국군 총 사령관의 군사 통제 지역에 있는 전체 외국적의 사민중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 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각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 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 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 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 통제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전체 외국 적의 사민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ㄷ. 쌍방이 본조 제59항 ㄱ목에 규정한 사민의 귀향과 본조 제59항 ㄴ목에 규정한 사민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ㄹ. (1) 실향 사민 귀향 협조 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좌 급 군관 사 (4) 명으로 구성하며 그중 이 (2) 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하며 그중 이 (2) 명은 연합국군 총 사령관이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 정전 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 책임지고 상기 사민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사민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정전 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수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사민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사민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 (들) 을 선정하며 월경 지점 (들) 의 안전 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사민 귀향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 사민 귀향 협조 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

떠난 사항이던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
정전 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항 사민 귀향 협조 위
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 정전 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항 사민 귀향 협조 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제 4 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60.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사령관은 쌍
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 (3)
개월 내에 각기 내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 회의를 소집하
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제 5 조

부 칙

61. 본 정전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정전 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
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제12항을 제외한 본 정전 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7월 27일 1000 시에 조선 관문점에서 조선문 중국문 및
영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연합국군 총 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김 일 성

판 덕 회

마-크-더블유-클라크

김일성

최덕회

Mark W. Clark

참 석 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 석 대 표

조선인민군 대장

연합국군 대표단

수 석 대 표

미국 육군 중장

남

일

남일

윌리엄-케이-해리슨

W K Harrison

부 록

중립국 중환 위원회 직권의 범위

(제51항 1.목을 보라)

제 1 조 총 칙

1. 전체 전쟁 포로로 하여금 정전 후 피 중환권 행사의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은 파란 체코슬로바키아 서전 서서 및 인도에 각각 일 (1) 명씩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중립국 중환 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는 억류측의 관리 하에 있는 동안 피 중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 포로를 조건에서 수용한다 중립국 중환 위원회는 그 본부를 비 무장 지대 내의 관문점 부근에 두며 중립국 중환 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을 가진 종속 기관을 동 위원회가 전쟁 포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각 지점에 주재시킨다 중립국 중환 위원회와 그의 종속 기관의 사업을 감독하는 것을 쌍방 대표들에게 허락한다 이에는 해설과 면회를 포함한다

2. 중립국 중환 위원회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을 협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무장 령량과 기타 일체 공작 인원은 인도가 전적으로 제공하며 제네바 협약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 대표는 공정인이 되며 동 대표는 중립국 중환 위원회의 의장과 집행자로 된다 기타 4개국의 대표

는 각각 오십(50) 명을 넘지 않는 동수의 참모 보조 인원을 가지는 것을 허락한다. 각 중립국의 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결석할 때에는 동 대표는 자기와 동일한 국적을 가진 자를 후보 대표로 지정하여 그의 직권을 대행케 한다. 본 항에 규정한 일체 인원의 무기는 경무원 용 소형 무기에 한한다.

3. 상기 제1항에 규정한 전쟁 포로의 총환을 방해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력으로써 위협하지 못하며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도 전쟁 포로의 인신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들의 존엄이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허락하지 않는다(단 하기 제7항을 보라). 이 임무를 중립국 총환 위원회에 저지하며 위임한다. 동 위원회는 언제나 제비바 협약 중의 구체적 규정과 동 협약의 전반적 정신에 의하여 전쟁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보장한다.

제 2 조 전쟁 포로의 관리

4. 정전 협정 발효일 이후 피 총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 포로는 정전협정 발효일 이후 가능한 한 속히 최대한 목록(60) 일 이내에 억류 측의 군사 통제와 수용 하로부터 석방되어 억류 측이 지정하는 조건 내의 지구에서 중립국 총환 위원회에 넘어 간다.

5.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전쟁 포로 수용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

을 때에 억류측의 무장 부대는 그곳에서 철수함으로써 전항에 규정한 지구
구를 인도의 무장 력량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접수 관리케 한다

6. 상기 제 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억류 측은 전쟁 포로 관리 지구 주변
지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보장하며 억류 측 관리 지역 내의 어떠한
무장 력량이든지 (비 정규적 무장 력량도 포함) 전쟁 포로 관리 지구
에 대하여 여하한 교란과 침범 행동도 감행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며 단속
할 책임을 진다

7. 상기 제 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협정의 여하한 항목도 중립국 총
환 위원회의 임시 관할하에 있는 전쟁 포로를 통제하는 등 위원회의 합
법적 직무와 책임을 집행하는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3 조 해 설

8. 중립국 총환 위원회는 피 총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 포로
를 접수 관리하게 된후 즉시로 조치를 취하여 전쟁 포로의 소속 국가들
로 하여금 자유와 편리를 가지고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접수 관리하게 된
날부터 구실 (90) 일 이내에 하기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전쟁 포로의 관리
지구에 대표를 파견하여 동 소속국에 의탁하는 전체 전쟁 포로에게 그들
의 권리를 해설하며 그들이 고향에 도라가는 데 관련되는 모든 사항 특
히 그들이 집에 도라가 평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한다

7. 해설에 종사하는 이러한 대표의 수효는 중립국 총환 위원회의 관
피하에 있는 전쟁 포로 매 천 (1,000) 명에 대하여 천 (7) 명을 넘지 못
하되 허락될 최저 총수는 오 (5) 명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

나.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가 전쟁 포로에게 접근하는 시간은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결정하며 대체로 전쟁 포로의 매우에 관한 제비바 협
약 제53조에 의거한다

다. 일체의 해설 사업과 면회는 중립국 총환 위원회 각 성원 국가
의 대표 일 (1) 명씩과 억류 측 대표 일 (1) 명의 립회하에 진행한다

르. 해설 사업에 관한 추가적 규정은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제정하
며 상기 제3항과 본 항에 열거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 해설에 종사하는 대표에게 그가 사업을 진행할 때에 필요한 무
선 통신 설비를 휴대하며 무선 통신 인원을 대동하는 것을 허용한다
통신 인원의 수효는 해설에 종사하는 인원이 거주하는 매 지구에
일 (1) 조 씩으로 제한하되 전체 전쟁포로를 한 지구에 집결하는 경우에
는 이 (2) 조를 허락한다 각 조는 북 (6) 명을 넘지 않는 통신 인원
으로 구성한다

9. 중립국 총환 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 포로는 동 위원회와 동 위
원회의 대표 및 그 종속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통신을 보내며 또 전쟁
포로 자신의 여하한 사항에 관한 요망이던지 알릴 수 있는 자유와 편리를
가지되 이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가 취한 조치에 의거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 4 조 전쟁 포로의 처리

10. 중립국 총환 위원회의 관리하에 있는 전쟁 포로는 누구나 피 총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 중립국 총환위원회의 각 성원 국가 대표 일 (1) 명씩으로써 구성된 기관에 총환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한다 일단 이러한 청원이 제출되면 중립국 총환 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 기관의 하나는 즉시로 이를 고려하여 이러한 청원이 유효함을 즉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청원이 일단 제출되어 중립국 총환위원회나 또는 그 종속 기관의 하나가 그 효력을 발생케 하는 즉시로 동 전쟁 포로를 총환 준비가 된 전쟁 포로를 위하여 설치한 천막에 보내어 거주시키며 그 다음에 동 전쟁 포로를 중립국 총환 위원회의 관리 하에 단체로 즉시 판문점 전쟁포로 교환 지점에 보내되 정전 협정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총환한다

11. 전쟁 포로의 관리를 중립국 총환 위원회에 넘겨 구십 (90) 일이 만기된 후 상기 제8항에 규정한 대표들의 전쟁 포로와의 접근은 즉시 끝나며 피 총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쟁 포로의 처리 문제는 정전 협정 초안 제60항에서 소집할 것을 제외한 정치 회의에 넘겨 삼십 (30) 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게 하며 이 기간중에 중립국 총환 위원회는 이러한 전쟁 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어떠한 전쟁 포로든지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그들의 관리를 책임지고 관리하게 된 후 백이십 (120) 일 이내에 피 총환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고 또 정치회의에서도 그들에 대한 어떤 기라의

처리 방법에 합의를 보지 못한 자는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그들의 전쟁 포로 신분을 해제하여 사민으로 하는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각자의 청원에 따라 그중 중립국에 갈것을 선택한 자가 있으면 중립국 총환 위원회와 인도 적십자사가 이를 협조한다. 이 사업은 삼십 (30) 일 이내에 완수하며 완수한 후 중립국 총환 위원회는 즉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해산을 선포한다.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해산한 후 어느 때나 어느 곳을 막론하고 상기한 전쟁 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제된 사민으로서 그들의 조국에 도라가기를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있는 곳의 당국은 그들의 조국에 도라가는 것을 책임지고 협조한다.

제 5 조 적십자사의 방문

12. 중립국 총환 위원회의 관리 하에 있는 전쟁 포로에게 필요한 적십자사의 복무는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발표한 규칙에 의하여 인도가 제공한다.

제 6 조 신 문 보 도

13. 중립국 총환 위원회는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제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문계 및 기라 보도 기관이 본 협정의 령거한 전체 사업을 참관하는 자유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제 7 조 전쟁 포로를 위한 보급

14. 각방은 자기 군사 통제 지역 내에 있는 전쟁 포로에게 보급을 제

공하되 각 전쟁 포로 수용 시설 부근에 있는 합의된 인도 지점에서 필요한 공급 물자를 중립국 중환 위원회에 인도한다

15. 제네바 협약 제118조에 의하여 관문점 교환 지점까지 중환하는 경비는 억류 측이 부담하며 교환 지점으로부터의 경비는 전쟁 포로가 의탁하는 측이 부담한다

16. 중립국 중환 위원회가 전쟁 포로 수용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 근무 인원은 인도 적십자사가 제공할 책임을 진다

17. 중립국 중환 위원회는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료를 제공한다. 억류 측은 중립국 중환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료를 제공하되 특히 장기 치료 또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 입원 기간 중 중립국 중환 위원회는 전쟁 포로를 계속 관리한다. 억류측은 이러한 관리를 협조한다. 치료를 완료한 후 전쟁 포로는 상기 제4항에 규정한 전쟁 포로 수용 시설로 돌려보낸다

18. 중립국 중환 위원회는 그 임무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쌍방으로부터 필요한 합법적인 협조를 받을 권한을 가진다. 단 쌍방은 어떠한 명목이나 어떠한 형식으로서든지 간섭 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제 8 조 중립국 중환 위원회를 위한 보급

19. 각방은 자기 측 군사 통제 지역 내에 주재하는 중립국 중환 위원회 인원에게 보급을 제공할 책임을 지며 쌍방은 비무장 지대 내에서 이

러한 보급을 동등한 기초 위에서 제공한다. 세밀한 조치는 중립국 총환 위원회와 억류 측이 매번 결정한다.

20. 각 억류 측은 중립국 총환 위원회를 위하여 제23항에서 규정한 자 기측 지역 내의 교통로를 경유하여 거주지로 가는 동안 및 각 전쟁 포 로 관리 지구 이내가 아니라 그 지구 부근에 거주하는 동안에 해설에 종 사하는 상대방의 대표를 보호하는 책임을 진다. 전쟁 포로 관리 지구의 실 제 해설 내에서의 이러한 대표의 안전은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책임진다.

21. 각 억류 측은 해설에 종사하는 상대방 대표가 자기 군사 통제 지 역 내에 있을 때 그에게 수송 숙소 교통 및 기타 합의된 보급을 제공 한다. 이러한 복무는 상환의 기초 위에서 제공한다.

제 9 조 발 포

22. 본 협정 각 조항을 정전 협정 효력 발생 후 억류 측 관리하에서 의 총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전체 전쟁 포로에게 주지시킨다.

제 10 조 이 동

23. 중립국 총환 위원회에 속하는 인원 및 총환될 전쟁 포로는 상대방 의 사령부 (또는 사령부들) 와 중립국 총환 위원회가 결정한 교통로를 따 라 이동한다. 이 교통로를 표시하는 지도를 상대방의 사령부와 중립국 총 환 위원회에 제출한다. 상기 제4항에 지정한 지구 내를 제외하고는 이

러한 인원의 이동은 통행하는 지역이 속하는 측의 인원이 이를 통제하며
호종한다 단 이러한 이동은 어떠한 제약나 협박도 받지 않는다

제 11 조 절차에 관한 사항

24. 본 협정의 해석은 중립국 중환위원회가 한다 중립국 중환 위원회
및 (또는) 그 임무를 대리하게 되거나 또는 담당하게 된 종속 기관은
다수결의 기초 위에서 운영한다

25. 중립국 중환 위원회는 매주에 일차씩 적대 쌍방의 사령관에게 동 위
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전쟁 포로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되 매 주
말에 중환된 자 및 남아 있는 자의 수효를 표시한다

26. 본 협정은 쌍방 및 본 협정에서 지명한 5개국이 동의하면 정전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1953년 6월 8일 1400시에 조선 관문점에서 조선 문 중국 문 및 영 문
의 세가지 글로 작성한다 각 문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 대표단
수 석 대 표

조선 인민군 대장
남 일

연합국군 대표단
수 석 대 표

미국 육군 중장
월리암·케이·해리슨

